

## UCP600 운용상의 문제점과 합리적 개정방안의 모색

조성란\* · 김기선\*\*

- 
- I. 서론
  - II. UCP600 각 조항별 문제점 분석
  - III. UCP600의 개정방안
  - IV. 결론
- 

주제어 : UCP600, 일괄하자통지의무, 매입, 하자면제교섭권, 비서류적 조건

### I. 서론

신용장통일규칙은 신용장거래를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된 명실상부한 범세계적 통일규범이라 할 수 있다. 신용장통일규칙은 그것이 1933년 제정된 이후 운송과 보험 등 이에 귀속된 제반 무역관행의 변화흐름에 맞추어 현재 6차 개정에 이르고 있다. 이 같은 개정들은 소위 신용장거래관습에 관한 국제표준은행관행의 확립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주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2007년 개정된 현행 신용장통일규칙 제6차 개정(이하 UCP600 이라 칭함)의 개정 의도와는 달리 신용장거래에서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은 대단히 역설

---

\* 군산대학교 무역학과 강사, 경제학박사(주저자), E-Mail : paradise8@hanmail.net

\*\* 군산대학교 무역학과 교수(교신저자), E-Mail : kks@kunsan.ac.kr

## 2 무역상무연구 제70권 (2016. 5)

적이다. 이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UCP600상의 규정된 조항들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신용장 거래당사자들이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을 만큼 규정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불완전하다는데서 그 주된 원인을 찾을 수 있다.<sup>1)</sup>

즉, UCP600이 이전의 개정 규칙에 비해 자기완결성을 상당부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 운용에 있어 계속적으로 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고<sup>2)</sup> 특히 본 연구가 다루고자하는 몇몇 분야에서는 동일 규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도 법원의 견해가 일치되지 않고 있는 양상을 보이는 바, 이것이 바로 UCP600 규정의 불명확성과 불완전성에 대한 방증이라 할 수 있다.

그간 UCP600의 적용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다루고 그에 대한 효율적 운용과 해석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현재까지도 이어져오고 있음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 연구들의 대부분은 UCP600이 개정되었던 2007년을 기점으로 이루어진 연구의 시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 적시성에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당시 주요 선행연구들은 김광진<sup>3)</sup>, 박석재<sup>4)</sup>, 서정두<sup>5)</sup>, 신정식<sup>6)</sup>, 유재걸<sup>7)</sup>, 이방식·박석재<sup>8)</sup> 등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크게 서류심사와 관련한 관계 당사자들의 행위기준에 관한 내용과 운송서류의 유효성 그리고 신용장에 적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해석의 모호성에 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에 더하여 UCP600이 개정된 이후 이것이 신용장거래에 어떻게 반영되어 사용되어 졌는지 살피고 UCP600의 근본 제정취지와 방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그 문제점이 두드러진 UCP600상의 규정을 재해석하고 추후의 UCP700(가칭)의 개정에 필요한 이론적 틀을 제공하고자 한다.

- 1) UCP600의 또 다른 문제로 은행실무자 혹은 보험업계당사자들의 입장에 치우친 개정이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 박석재,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600)의 주요 내용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33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7. 2.
- 2) 또 다른 견해로 신용장 법리와 논리의 미흡보다는 실무상 매뉴얼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는 언급도 있다.
- 3) 김광진, “UCP600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8. 06.
- 4) 박석재,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600)의 주요 내용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33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7. 2.
- 5) 서정두, “UCP600 서류심사기준의 문제점과 실무상 유의점”, 무역상무연구 제33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7. 2.
- 6) 신정식, “국제무역거래에서의 서류조건에 관한 비교연구”, 무역상무연구 제54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2. 5.
- 7) 유재걸, “신용장 서류심사기준에 있어서 ISBP(국제표준은행관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청구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2006. 8.
- 8) 이방식·박석재, “UCP600의 실무상의 유의점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42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9. 5.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첫째, 무역업계의 실무관행 및 은행관습과 UCP600 규정상의 모순점을 도출하고, 둘째, 관련 부문들에 대한 ISBP745, 국내외 관련 법원판결을 분석하여 현행 UCP600의 문제점을 규명함과 아울러 궁극적으로 본 연구 결과가 추후의 UCP700(가칭)의 개정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연구의 목적을 둔다.

## II. UCP600 각 조항별 문제점 분석

### 1. 서류검토 및 취급에 있어서의 문제

#### 1) 은행의 일괄하자통지의무

UCP600 제16조 a, c, d항은 불일치서류의 취급에 관한 은행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중 c항은 “지정에 따라 행동하는 지정은행, 확인은행(있는 경우) 또는 개설은행은 인수·지급 또는 매입을 거절하기로 한 경우, 제시자에게 그러한 취지를 한번에 일괄하자통지 하여야 한다.”라고 하며 은행의 일괄하자통지에 대한 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d항은 “그러한 통지는 전기통신 혹은 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기타 신속한 수단으로 제시일의 다음날로부터 제5은행영업일의 마감시간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반드시 행해져야 한다.”고 하며 은행의 신속한 서류검토와 수익자의 서류치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일괄하자통지라 함은 은행이 수익자로 하여금 서류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하자사항을 통지할 수 있는 기회는 오직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으며, 이때 은행은 모든 하자사항을 총 망라하여 통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1회 하자통지 후 또 다른 하자사항을 발견하여 재 통지할 수 없으며, 이미 대금지급이 완료된 후 1회 때 통지하지 못하였던 하자사항을 이유로 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sup>9)</sup>

그렇다면 만일 수익자가 일괄통보 받은 1차로 통지받은 서류상의 하자사항을 완벽하게 치유한 후 다시 서류를 제시하였으나 은행은 새롭게 제시된 서류에서 또 다른 하자사항을 발견하고 대금지급을 거절한 경우<sup>10)</sup> 이 같은 은행의 행위는

9) 이는 수익자가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한 경우이다. 첫째, 유효기일을 경과하지 않고 서류를 제시하였다는 것, 둘째, 1회 하자 통지 후 수정 제시한 서류가 완벽한 서류요건을 갖춘 경우이다.

#### 4 무역상무연구 제70권 (2016. 5)

UCP600 제1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적절한 행위인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특히 은행의 그 같은 2차 통보 행위가 1차 통보된 서류의 하자사항에 대한 불완전한 치유에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본 조항의 강제 적용에 예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후에 있었던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sup>11)</sup>에서는 일괄하자통보에 따른 서류의 보완·치유는 당해 하자에만 적용된다고 판시되었다. 따라서 은행의 일괄하자통지의무를 다루고 있는 UCP600 제16조 c항은 일괄하자통지에 귀속되는 서류와 그것이 허용하는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 2) 개설은행의 개설의뢰인에 대한 서류하자면제교섭권

UCP600 제16조 b항은 “개설은행은 제시가 일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한 경우 개설은행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개설의뢰인과 불일치에 관한 권리포기여부를 교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제14조 b항에 언급된 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서류하자면제교섭권을 제시하고 있다.

본 조항의 적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고려사항이 추가적으로 수반될 수 있는 바, 첫째, 개설의뢰인과 하자면제교섭을 진행하는 개설은행은 당해 서류상에 존재하는 모든 하자사항을 총 망라하여 통지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즉, 개설의뢰인이 누락된 하자가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승낙을 하였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하는 것이다.

둘째, 하자면제교섭에 대한 수락여부를 통지하는 개설의뢰인에게도 5일의 기간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sup>12)</sup>.

사실 현행 UCP600 제16조 b항하에서는 불일치서류를 접수한 개설은행이 서류검토를 완료한 후 개설의뢰인에게 당해 하자사항들의 경중에 관계없이 관련 서류를 수리할지 여부를 문의함에 있어 경우에 따라 개설은행의 불완전한 서류검토에 의해 누락된 불일치사항이 포함된 경우 이에 대한 책임범위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10)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6221판결 ; 이 사건을 요약하면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상에 하자사항이 존재하였고 이를 심사한 개설은행은 당해 서류상의 모든 하자사항을 정리하여 서류검토 기일 내에 수익자에게 통지하였다. 이후 수익자는 당해 하자사항을 완벽하게 수정하여 재 제시 하였으나 개설은행은 2차로 제시받은 서류에서 발견한 또 다른 하자사항을 근거로 다시 한 번 대금지급을 거절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유효기일이 경과하였고 수익자는 이를 이유로 개설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1) 대법원 2011. 1. 13. 선고2008다88337판결.

12) 실무상 개설은행들은 서류수취 후 복사본을 개설의뢰인에게 송부하여 통상 3일 이내에 하자 등 이상여부에 대한 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아가 개설은행으로부터 하자면제교섭을 받은 개설의뢰인 역시 개설은행에게 부과되는 5일간의 기간과 동일하게 하자서류 수리여부를 통보해야하는지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다.

따라서 UCP600 제16조 b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라 보겠다.

### 3) 비서류적 조건의 해석

UCP600 제14조 h항의 규정에 따르면 “신용장조건과 일치함을 나타낼 서류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조건만을 표시하고 있는 경우 은행은 그러한 조건이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무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용장에 어떠한 조건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서류를 명확하게 지정하여 주지 아니하는 한 이는 비서류적 조건으로 간주되어 은행으로부터 무시된다는 것이다.<sup>13)</sup>

나아가 UCP600의 해석적용에 보완적 기능을 하는 ISBP745에서는 그 A26항에서 다음과 같은 적용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즉, “신용장에 그 준수여부를 알 수 있는 서류를 명시하지 않는 조건이 들어 있는 경우 그 조건의 준수는 명시된 서류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더라도 무방하다. 그러나 명시된 서류에 담긴 정보는 비서류적 조건과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비서류적 조건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비서류적 조건에 관한 판례의견과 ISBP745<sup>14)</sup>의 관점에서 볼 때 비서류적 조건은 현행 UCP600상의 규정대로 은행이 그 유효성을 무시하는 정보로 처리할 수 있다. 일정한 요건하에서는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UCP600상의 비서류적 조건의 이행과 판례의견과의 대립은 신용장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효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비서류적 조건에 대한 법리와 이의 해석기준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이 요구된다.

13) UCP400까지는 비서류적 조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으나 이것이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이어지자 UCP500부터 반영하기 시작한 것이다. ; 양영환·서정두, 신용장판례연구, 삼영사, 1995, p. 186.

14) ISBP745 A26항 ; 예컨대, 신용장에서 “Packing in wooden cases(목재상자로 포장함)”라고 명시하면서 그러한 정보가 표시되어야 하는 서류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명시된 어떤 서류에서 다른 종류로 포장되었음을 표시하는 기재가 있다면 이는 정보의 저촉으로 간주된다.

## 2. 용어 해석의 기준과 적용에 있어서의 문제

### 1) 매입의 정의

UCP600 제2조 c항은 매입의 정의에 대하여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지정은행이, 지정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는 은행영업일 또는 그 전에 대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대금지급에 동의함으로써 환어음(지정은행이 아닌 은행 앞으로 발행된) 및/또는 서류를 매수하는 것”이라고 하며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매입은행의 매입행위는 개설은행의 대리인이 아닌 본인의 자격으로 환어음을 매수하는 여신행위로 만일 매입은행의 매입이 선의의 환어음 소지인의 자격으로 이루어졌다면 이 매입대금은 수익자에게 확정적이고 무조건적인 현실적 대가의 즉시지불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의 한 판례<sup>15)</sup>에서 “별단예금계좌”로의 매입대금이 이루어져 이 같은 매입의 방식도 확정적이고 무조건적인 현실적 대가의 즉시지불인 매입대금 방식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법원은 별단예금계좌로의 매입방식도 매입의 한 방식으로 인정하였지만 이는 UCP600 제2조의 규정을 미루어 짐작한 것으로 당해 규정만으로는 확대해석에 무리가 있어 보완이 요구된다.

### 2) 은행 영업시간

UCP600 제33조에 따르면 “은행은 영업시간 외에 제시한 서류에 대해서는 수리할 의무가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조에서는 “은행영업일이란 이 규칙이 적용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은행이 통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이라고 하여 은행영업일은 첫째, 은행 휴일이 아니라 은행이 통상적으로 영업 중이어야 하며, 둘째, 이 규칙에서 요구되는 신용장 개설, 조건변경, 지급, 결제 등의 기능을 수행<sup>16)</sup>하고 있는 날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을 놓고 볼 때 은행영업일에 대한 해석은 명료해 졌으나 현행 UCP600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영업시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두지 않고

15)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다93817판결.

16) 두 번째 조건은 극히 일부 은행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영업을 하지만 소매금융업무(예금업무나 외화환전, 대출업무 등)만을 수행할 뿐 신용장개설, 조건변경, 신용장 결제 등의 업무는 수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은행은 통상적으로 영업(regularly open)은 하지만 이 규칙을 조건으로(subject to these rule) 영업을 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은행영업일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은행의 영업일이지만 관련은행의 통상적 영업시간이 경과된 후 수익자로부터 제시된 서류가 접수될 경우, 당일 접수인지 아니면 익일접수인지에 대한 판단은 결과적으로 법원의 관례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다.<sup>17)</sup>

현행 UCP600에 은행영업일에 관한 이 같은 불완전한 규정은 서류를 제출하는 당사자에게나 서류를 접수하는 은행에게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이 요구된다.

### III. UCP600의 개정방안

#### 1. 은행의 일괄하자통지 부여 기회

현행 UCP600 제16조 c항이 규정하고 있는 은행의 일괄하자통지의무에 대해서는 ICC와 대법원 모두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바, ICC에서는 “수익자는 서류의 제시기간 또는 유효기일이 경과되기 이전에는 언제라도 서류의 불일치 사항을 치유 또는 보완하여 재차 서류를 제시할 권리가 있으므로 개설은행은 최초의 지급거절 통지에 관련 불일치 사항을 일괄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수익자가 서류를 재 제시한 이후 부가적인 불일치 사항을 추가하여 통지할 수 없다.”라고 유권해석<sup>18)</sup> 하였으며, 우리나라 대법원<sup>19)</sup>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은행의 일괄하자통지의무는 통지 당시 존재하였던 하자사항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은행의 일괄하자통지의무를 논할 수 있는 수익자는 통지 받은 불일치사항을 완벽하게 치유·보완한 수익자에 한한다.”라고 판시하면서 은행의 일괄하자통지의무에 더하여 수익자에게도 완벽한 서류의 치유·보완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본 조항의 해석·적용에 있어 주의할 것은 일괄하자통지의무는 비단 은행에게만 귀속되는 조건이라고만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상술한 우리나라 대법원판례에서와 같이 수익자가 은행으로부터 보완 요구를 받은 서류에 대해 그 불일치사항을 정정

17) 사실 각국의 은행업무 지침에 따르면 지정은행 혹은 개설은행은 은행영업시간 이외에 서류 제시가 이루어진 경우 당일접수로 취급할지 또는 익일접수로 취급할지 여부에 대해 선택권을 갖지만 이 은행영업시간은 각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차이가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

18) ICC, *Case Studies on Documentary Credits*, ICC Publication No. 459, ICC Publishing S. A., 1989, Case 52,53. ; ICC, *More Case Studies on Documentary Credits*, ICC Publishing S. A., 1991, Case 209.

19)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6221판결.

8 무역상무연구 제70권 (2016. 5)

한 후 당해 은행에 재 제시하였다 할지라도 재 제시된 서류가 1차로 제시 받았던 당초의 서류와는 또 다른 하자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든지 또는 불완전한 보완으로 말미암아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 은행은 이를 이유로 유효기일이 남아있는 경우 또 다시 서류의 재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유효기일이 경과된 때에는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일괄하자통지의무는 일견 수익자에게도 서류의 완벽한 보완이라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sup>20)</sup>

UCP600 제16조 c항의 규정 취지를 그대로 인용하자면 은행은 2차로 제시된 서류에서 다른 하자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 즉, 은행의 일괄하자통지의무는 통지 당시 존재하던 하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고 그 후에 당초의 일괄하자통지 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추가적 하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일괄하자통지방식에 따라 서류상에 존재하는 불일치를 한 번에 통지하여야 하고 이러한 기회는 한 번만 주어진다고 하여 추후 다시 보완하여 제시된 서류에서 불완전한 하자보완으로 인해 재차 또 한 번의 하자를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명백하다.<sup>21)</sup>

요컨대 개설은행 등의 일괄하자통지의무는 당해 서류에 귀속되는 것으로 만일 새로이 제시하였거나 추가로 제시한 서류에서 또 다른 하자가 발견된 경우 은행은 재차 일괄하자통지의 기회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추후의 UCP의 개정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20)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6221판결 ; 이 사건에서 개설은행은 1차로 제시된 서류 중 상업송장에 물품명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상업송장번호 및 일자가 실제 상업송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후 수익자는 수정 후 재 제시를 하였으나 이번에는 상업송장상의 물품명세(Size analysis 0-50 MM 75.21%)가 신용장상의 물품명세(SIZE 0-100 MM 100PCT)와 다르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이 거절된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위 신용장 조건과 상업송장상의 기재는 불일치하다고 보고 개설은행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21) 개설은행이 수익자가 재차 제시한 서류에서 발견한 또 다른 하자를 근거로 대금지급을 거절함으로써 일괄하자통지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수익자의 의견은 “개설인은 적시의 통보를 하지 않거나 또는 적시의 통보 시 통보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서류의 불일치 사항에 대해서는 대금지급거절의 근거로서의 권리주장은 박탈된다.”라고 하였던 개정 UCC 5-108(c)의 규정과 UCP600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해석될 수 없는 것으로서 처리되어야 하겠다.

## 2. 서류하자면제교섭권<sup>22)</sup>

서류치유의 기본원리는 유효기일 전에 치유 내지 보완하도록 상업적 차원에서 배려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치유가 불가한 하자에 대해서는 개설의뢰인의 “권리 포기(waiver)<sup>23)</sup>”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UCP600 제16조 b항에서는 “개설은행은 제시가 일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한 경우 개설은행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개설의뢰인과 불일치에 관한 권리포기여부를 교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제14조 b항에 언급된 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개설은행의 개설의뢰인에 대한 서류하자 면제 교섭권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개설은행의 하자면제 교섭권 행사에 있어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항은 개설의뢰인에게 통지해주는 서류의 하자사항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에 대한 결정이다.

본질적으로 하자면제 교섭이라는 은행관행은 권리포기 법리를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설의뢰인이 통지받는 서류의 하자사항의 범위와 이의 적용에는 몇 가지 주요한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권리포기라 함은 이미 자신에게 알려진 권리에 대한 고의적인 포기를 의미한다.<sup>24)</sup> 따라서 개설의뢰인은 하자면제 교섭을 받을 당시 개설은행으로부터 수익자가 제출한 서류에 모든 하자 사항을 일괄통보 받은 상태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개설은행이 통보한 서류의 불일치 사항이 총 망라되어 있지 못하고 누락된 불일치 사항이 계약의 중대한 사항이 될 경우에는 당해 누락된 하자 사항까지 권리포기 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비록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의 하자면제 교섭에 응하여 당해 하자사항들을 권리 포기해 주었다 하더라도 누락된 불일치 사항이 매매계약에 영향을 주었다면 당해 누락된 하자 사항까지 추인한 것은 아니므로 개설은행은 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게 된다는 사실이다.<sup>25)</sup>

- 
- 22) 본 절의 논점과 개정근거에 대해서는 조성관, “화환신용장 국제표준은행관습의 서류심사기준에 관한 해석 연구”, 군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16. 2. pp. 82~84의 내용을 참조.
- 23) 신용장통일규칙의 어떤 조항에도 신용장 거래에서의 권리포기를 다루고 있지는 않다. 물론 신용장 거래에서 소위 형평법상의 법리인 권리포기/금반언 법리를 적용 내지는 준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 김기선, “신용장 거래관습에 있어 서류치유 원리와 금반언법리의 적용방식”, 무역상무연구 제13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0. 2, p. 524.
- 24) *Wienke vs Smith*, 179 220,226, 176, R42(1918) ; 김기선, “한·미 신용장판례 비교평석 : 하자면제 교섭과 추인의 해석기준”, 무역상무연구 제16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1. 8, p. 26.
- 25) 이와 관련된 판례들은 *United Commodities-Greece vs Fidelity Int'l Bank*, 64N.Y.2d 449, 457,

둘째, 권리포기 법리에서 비롯된 개설은행의 하자면제 교섭권은 일반적으로 신용장거래에서 통용되는 국제표준은행관습<sup>26)</sup>이지만 그 적용방식과 요건에 대해서는 기존의 판례도 적고 UCP600이나 ISBP745에도 직접적 관련 규정을 두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 부분의 해석을 위해서는 반드시 신용장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즉, 1998년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판시된 한 판례<sup>27)</sup>의 경우에서처럼 개설은행의 하자면제 교섭권 법리를 일반매매계약의 법리로 유추·적용하여 그 적용요건과 범위를 확대해석하는 것은 개설은행의 하자면제 교섭권과 관련한 국제표준은행관행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은 물품을 인수한 후 합리적 기간 이내에 그 물품의 인수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는데, 만일 당해 합리적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물품인수 여부를 매도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당해 물품의 하자여부와 관계없이 계약물품을 수리해야 한다.<sup>28)</sup>

그러나 이 같은 매매계약의 하자통지 의무를 여과 없이 신용장거래에 적용할 경우 이는 신용장거래관습의 본질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개설은행의 책임 범위를 호

489 N.Y.S.2d 31, 4, 478N.E. 2d 172(1985) ; *Voest-Alpine Int'l Corp. vs Chase Manhattan Bank, N.A* 707 F.2d 680, 685(2d cir, 1983) ; *Transamerica Delaval Inc.*, 545 F. Supp. at202 n. ; *Instituto Nacional de Comercializacion Agricola(INDECO) vs Continental Ill. Nat'l Bank & Trust Co.*, 536 F.Supp. 279, 285(N.D.Ill, 1982) ; John F. Dolan, *The Law of Letter of Credit*, Warren Gorham & Lamont, 1996, section 6.06[2] 6~74이하 참조.

26) Rober M. Rosenblith, "Seeking a waiver of Documentary Discrepancies from the Account party : Unexplored Legal Problem", Vol. 56, 1990, pp.81~102.

27)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 16114 판결 ; 이 사건에서는 우리나라 소재의 개설은행이 수익자로부터 제출받은 하자서류에 대해 수입업자인 개설의뢰인에게 당해 하자사항에도 불구하고 선적된 물품을 인수할지 여부를 문의하였는데 이때 개설은행의 하자서류 면제 내역통보에는 서류의 불일치 사항이 총망라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개설의뢰인은 개설은행으로부터 통지 받은 하자서류의 내역을 검토한 결과 큰 문제가 없다고 보아 제출된 불일치 서류를 수리하겠다는 통보를 개설은행에게 하였는데 그로부터 수개월 후 인수받았던 계약물품에 하자가 있었음을 발견하고 당시 개설은행으로부터 수령하였던 신용장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당초 개설은행이 통지하였던 하자면제 교섭 내역에 중대한 서류 불일치 사항이 몇 가지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개설은행에게 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매매계약에 일반 법리를 들어 소위 매수인의 계약 목적물 검사와 하자통지 의무에 관한 제 규정에 근거한 유추 해석의 일환으로 매수인의 지위에 있는 개설의뢰인은 개설은행으로부터 서류를 인도받은 후 합리적 기간 내에 이를 검토하고 하자가 발견될 경우 반드시 합리적 기간 내에 개설은행에게 수리여부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라는 견해를 밝히면서 이미 수개월이 경과한 후 당시에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던 하자를 이유로 작금에 이르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28) 영국의 물품매매법 제35조 ; 미국통일상법전 제2-602조(1)항 ;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유엔협약 제38조 ; 한국 상법 제69조.

도할 우려가 있다.

즉, 1997년 미국에서 판시된 판례의견<sup>29)</sup>에 따라 개설의뢰인의 합리적 기간 경과 후의 서류하자통보(현행 UCP600 규정상 서류검토기간 5일 이내의 통보)가 있었다 할지라도 개설은행으로부터 통지 받았던 하자면제 교섭 사항에 결함 또는 불완전성이 있었다면 그 궁극적 책임은 개설은행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지 개설의뢰인의 뒤 늦은 하자통지에 근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끝으로 상술한 바와 같은 국내외 판례 의견에 따라 신용장거래에 있어 개설의뢰인은 물품매매계약에서와는 달리 계약의 목적물을 대표하는 서류의 검토 및 하자통보의 책임, 의무의 당사자가 아님은 명백하며 그와 같은 책임을 개설의뢰인에게 부담시켜 이를 확정하려 하였다면 개설은행과 개설의뢰인간의 법률관계를 지배하는 소위 대금충당약정 내에 이에 관한 명시조항을 삽입하였어야 했을 것이다.<sup>30)</sup>

추후 개정된 UCP에서는 개설은행의 서류하자면제교섭권 행위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위기준 및 개설은행의 안전조치 등에 관해 보다 명확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 3.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 인정 범위

비서류적 조건은 신용장의 본질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판례에서는 그 조건을 인정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실무에서 서류를 취급하는 당사자들로 하여금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우선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에 대한 대법원과 ICC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한 판례를 통해 “비서류적 조건은 신용장의 본질에 비추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사적자치의 원칙상 그 내용이 신용장 기재의 문언자체에 의하여 완전·명료하고 수익자를 포함한 신용장 개설 당사자 사이에 그 조건에 따르기로 한

29) *Oei and Kools de visser vs Citibank N. A* 957 F. Supp. 429 (S.D.N.Y. 1997) ; 미국 뉴욕법원에서 판시된 이 판례는 상술한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와 비슷하게 수입업자인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의 부주의에 의한 불완전한 하자면제 교섭권의 이행에 대해 소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개설은행판의 신용장대금 충당약정에 기한 신용장대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보다 자세한 판례 내용에 대해서는 *Letter of Credit Update*, vol.13, No.5, May 1997. pp. 27~50 참조.

30) 또는 개설의뢰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어서 발급되는 서류에 필연적으로 잠재적인 하자가 있을 경우, 개설은행 자신은 개설의뢰인의 불법적인 계약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명백한 면책조항을 두었어야 했을 것이다. ; 상개논문, pp. 29~31.

합의가 있으면 유효하다.”고 판시하면서 “비록 비서류적 조건의 내용이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좌우될 여지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사유만 가지고 불명확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며 제한적으로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을 인정하였다.<sup>31)32)</sup>

ICC는 ISBP를 통해 보다 세세한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신용장 개설 시 비서류적 조건의 삽입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비서류적 조건이 담긴 서류를 매입할 경우에는 건건이 개설은행 앞으로 수락여부 등을 조회하고 수익자 앞으로 별도의 추가적인 채권보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sup>33)</sup>. 이는 제한적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결국 이 같은 조건은 신용장거래의 안전성을 해치고 신용장거래의 위축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하며 비판적 견해를 보였다. 그 외에도 ISP98이나 개정 미통일상법전에서도 이에 관해 언급은 하고 있으나 명확하게 인정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없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법원의 판례의견으로 미루어보아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과 그것의 인정범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부문이라 판단된다. 첫 번째 판례의견<sup>34)</sup>으로 “...그 조건의 내용이 신용장 기재 자체에 의하여 완전하고 명료하며 그 조건을 수익자를 포함한 신용장의 개설당시 당사자들이 따르기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위 통일규칙 조항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 다른 판례<sup>35)</sup>에서는 “비록 UCP가 비서류적 조건을 무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도 신용장 거래에도 원칙적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이상, 신용장에 기재된 비서류적 특수조건의 내용이 당해 신용장 기재의 문언 자체에 의하여 완전하고 명료한지 여부, 당해 신용장 개설 및 비서류적 특수조건이 삽입된 경위, 비서류적 특수조건의 내용, 수익자가 그 비서류적 특수조건을 응낙하였는지 여부 및 그 특수조건의 성취에 관하

31)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74683판결.

32) 그러나 또 다른 견해에 따르면 비록 한국의 대법원이 비서류적 조건도 서류상 나타낼 수 있는 것이라면 서류화 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이는 신용장의 “서류성 원칙”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국제적 추세에 동화되지 않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33) ICC Opinion R.585/TA. 515.

34) 서울고등법원 2001. 2. 13. 선고2000나42474판결.

35) 매입은행은 신용장 개설 당사자는 아니지만 비서류적 조건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제3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그가 특수조건의 성립에 합의를 하였는지 여부 또는 그 조건의 성취에 관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을 묻지 않고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으로 결국 매입은행은 스스로 비서류적 조건 유효성을 용인하고 신용장 요구서류를 매입한 것이니 만큼 나중에 비서류적 조건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김태훈, “신용장에 있어서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 대법원 2000. 5. 30. 선고 98다47443판결 평석, 법률신문 2000. 9. 14. 제2914호 참조.

여 수익자가 관여할 수 있는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신용장에 부가된 이와 같은 비서류적 특수조건이 신용장의 본질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일단 그 유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후에 그와 같은 조건의 존재를 인식하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당해 신용장 매입은행에게도 그 특수조건의 효력은 미치므로 당해 신용장 매입은행이 이와 같은 특수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신용장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에게 신용장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판시하여 UCP600이 규정하고 있는 비서류적 조건의 취급에 추가하여 그 유효성과 요건을 확인하였다.<sup>36)</sup>

이를 종합해보면 비서류적 조건은 UCP600 제14조 h항에 의해 무시되어야 하나 그 비서류적 조건이 기타 다른 서류 그리고 거래 당사자간에 그 내용의 이행을 확인함으로써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이는 정상적인 신용장상의 한 서류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추후의 UCP개정에서는 비서류적 조건의 취급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인정조건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 4. 별단계좌로의 매입대금 입금에 대한 해석

현행 UCP600에서는 기존의 개정 UCP들과는 달리 매입에 대한 정의 및 매입방식에 대해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으나 이미 상술한 바와 같이 별단계좌로의 매입대금입금방식의 인정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을 놓고 볼 때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사실 이러한 별단계좌로의 매입대금 입금방식은 UCP500이 발효되던 시기에도 제기되었던 사안이었던 만큼 보다 명확한 해석이 요구된다.

이 같은 매입방식에 대해 우리나라 법원<sup>37)</sup>에서는 “갑 은행이 을 주식회사의 신용장 매입의뢰에 따라 매입대금을 을 회사의 별단예금 계좌에 입금해 두면서 매입대금을 위 별단계좌에 입금해 두었다가 신용장 대금이 갑 은행에 지급되면 기존에 지급 거절된 신용장 대금을 위 계좌에서 상계하고 잔액을 을 회사가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을 회사와 합의한 사안에 대해 갑 은행이 신용장 매입에 대하여 현실적인 대가를 즉시 지급하였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36) 이와 관련한 또 다른 판례에 대해서는 대법원 2008. 9. 11. 선고2007다74683판결 참조.

37)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다93817판결, 서울고법 2009. 10. 15. 선고2008나104309판결.

나아가 “을 회사가 갑 은행에 다른 신용장 매입대금을 상환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단예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상계 대상으로 삼아 다른 신용장 매입대금의 담보로 삼기로 한 것은 별도 합의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하여 갑 은행이 현실적 대가를 즉시 지급한 효력은 부정되지 않는다.<sup>38)</sup>”는 내용을 판시하였다. 요컨대 양 당사자간에 합의된 상환 채무건과 관련한 별단계좌로의 매입대금입금은 매입은행의 확정적이고 무조건적인 현실적 대가의 즉시지불을 구성하는 것으로 “별단예금계좌”는 매입의 한 방식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UCP500이 발효 중이던 시기의 한 판례<sup>39)</sup>에서도 “신용장통일규칙 제10조 b항 ii호의 매입이라고 함은 매입을 수권 받은 은행이 환어음 및/또는 서류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단순히 서류만을 점검하는 것은 매입이 아니다.”라고 하는 판례의견과 국제상업회의소 은행기술실무위원회의 1994. 9. 1.자 의견서(Position Paper No 2)에서 “위 신용장통일규칙 제10조 b항 ii호에 명시된 대가의 지급이라 함은 현금, 수표, 은행을 통한 이체, 구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즉시 지급하는 것 또는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연지급확약 또는 환어음의 인수를 제외한다.)으로 풀이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추어 서류의 매입은 매입을 수권 받은 은행이 현금, 구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수익자에게 현실적인 대가를 즉시 지급하거나 대금지급 채무를 부담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고, 여기서 후자의 방법에 의한 매입은 매입은행이 특정 일자에 수익자에게 대가를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현실적인 대가의 즉시 지급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 같은 여러 판례의견과 ICC의 유권해석을 통해 볼 때 추후의 UCP개정에서는 이와 같은 실무적 은행관행을 포함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명료하게 매입의 정의와 방식에 대해 규칙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판단된다.

## 5. 은행영업시간에 대한 해석

신용장 유효기일 또는 서류의 제시기일은 그 종료시점이 당일의 자정까지가 아니라 지정된 은행의 내부규정에 따른 일상적인 영업시간이 마감될 때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이 기준은 각 국가의 국내법에 차이가 있어 당사자간에 혼란과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

38) 서울고법 2009. 10. 15. 선고2008나104309판결.

39) 대법원 2002. 10. 11. 선고2000다60296판결.

이와 관련하여 ICC는 한 질의(40)에서 “서류의 제시가 허용된 경우 무역부서의 은행영업시간 이후에 제시된 서류에 대해 UCP600 제33조에 의거하여 은행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은행영업일 외의 제시를 수리할 의무가 없다.”고 하였다. 즉, 우편수령부서가 개점하든 은행이 실제로 영업을 하는지를 불문하고 담당 은행의 무역부서가 실제 영업하지 않는 날 제시된 서류에 대해서는 거절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질의의 목적을 위하여 서류제시가 은행의 무역부서 은행영업시간 외에 행하여지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은행이 결정한다고 그 해석을 유보함으로써 은행영업시간이 경과된 후의 서류제시에 대해서는 여전히 행위의 불확실성을 노정하고 있다.

은행영업시간과 관련하여 지정은행 또는 개설은행에게 제시가 이루어지는 경우 은행영업시간은 이들 각 은행의 현지시간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편수령부서가 영업하는 날 서류를 수령하였지만 은행영업시간이 경과된 후의 수령이라면 무조건 이를 승낙할 필요는 없으며 만일 수리를 거절할 경우 그 다음 은행 무역부서의 영업일에 수령된 것으로 간주한다.<sup>41)</sup>

보증신용장의 국제표준은행관습을 다루는 ISP98 제9.03조에 따르면 “특정행위를 위한 기간은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 장소에서 그 행위가 가능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이 기산일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효기간의 종료시점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제시장소의 영업시간의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기간의 산정을 위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다. 나아가 ISBP98 제3.04조 d항에서는 제시장소 지정에 대해 “i. 보증신용장상 표시된 일반 우편주소 ii. 우편이나 서류의 배달장소로 지정된 장소 내의 어느 지점, iii. 제시장소에서 실제로 혹은 외관상 수령권한을 가진 자로 서류의 제시처를 설명하였다. 제3.05조 a항은 개설 이후부터 만료일에 만료되기 전까지 이루어진 제시를 적시제시로 보며, b항은 제시장소에서 업무종료 후에 이루어진 제시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영업시간 이후의 서류제시와 관련하여 화환신용장에서의 국제표준은행관습과는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화환신용장거래관습에 있어 영업시간의 종료시기는 해당일이 종료되는 시간이 된다고 유권해석 하였던 ICC의 견해<sup>42)</sup>도 있으나 영업시간의 종료시간이 역시 명확하지 않아 이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별도의 조항이 추후 UCP의 개정에서

40) ICC Publication 697, R 648.

41) 수익자가 서류의 제시를 위해 서류를 송부할 경우 이의 산정기준은 발신주의에 따른다는 것과 비교할 경우 이 은행영업시간에 대한 기준은 도달주의를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42) ICC Official Opinion R 424.

요구된다 보겠다. 은행이 하자서류에 대해 대금지급의 거절을 통지하는 시간은 서류 제시 후 제5은행영업일의 마감시간인 24:00를 이용하고 있다는 이루나라 대법원의 판례<sup>43)</sup>를 원용한다면 “제5은행영업일의 종료시의 의미는 지정된 영업시간 (banking hours)의 끝이 아니라 당일 24:00이고 따라서 그 날 24:00이내에 전신 또는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지급거절통지가 발송된 것이라면 적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은행영업시간과 은행영업일을 같은 맥락으로 보는 데는 무리가 있겠으나 그에 내포된 의미를 들여다보았을 때 은행영업시간이라 함은 당 은행의 무역부서가 신용장에 대한 개설, 조건변경, 지급, 결제 그와 더불어 서류의 접수업무까지 수행하는 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만약 이 업무가 종료되면 은행의 영업시간도 종료되는 것으로서 기타 다른 부서에서 행여 서류를 제시받았다고 하여도 이는 무역부서의 정상적인 접수로 인정될 수 없는 바, 은행영업시간 외 제시된 서류는 그 다음 날 제시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 IV. 결 론

신용장거래에 있어 가장 문제의 소재가 되는 부문은 서류의 신용장 조건과의 일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과연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판단 기준 중 어느 것이 통일적이고 유효한 판단기준이 되느냐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주기 위한 범세계적통일규범인 UCP는 현재 UCP600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개정되어온 현행 UCP600도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당해 불완전한 부문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도 일관성이 결여되어 거래 당사자로 하여금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 해석방안을 제시하였던 기존의 연구들에 추가하여 UCP 제정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문제에 대한 해석방안을 도출하고 UCP700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각각의 분석들에 따라 본 연구가 도출할 수 있었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설은행의 일괄하자통지는 일회에 한한다고 하는 것은 당해 제시된 서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만일 수익자의 치유·보완이 불완전하여 재 제시된 서류에서 또 다

43)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1다58269판결.

른 하자가 발견된다면 이에 일괄하자통지의무의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개설은행이 개설의뢰인으로부터 서류하자면제교섭에 대한 승낙여부를 특정기간 이내에 통지받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에 그 기간을 합의하여야 할 문제로 개설의뢰인에게 제5은행영업일을 부과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셋째,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입장이 양분되고 있으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었거나 그것이 거래의 특성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다고 보는 경우 비서류적 조건도 서류조건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 바, 비서류적 조건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의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넷째, 별단계좌로의 매입대금 입금도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현실적 대가의 즉시지급에 갈음되는 바, 매입의 정의에 대한 포괄적 규정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끝으로 은행영업일과 영업시간에 대한 기준은 UCP6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영업시간은 각 국가마다 다르다는 점과 무역부서의 영업시간 외에 행해진 서류 제시에 대해 수락할지의 여부는 은행이 결정한다는 입장은 서류 제시자인 수익자로 하여금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이미 개정된지 10년이 되어가는 현행 UCP600은 새로운 은행관행과 무역관습을 적시성 있게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가 제시한 몇몇 부문에서의 문제점 제기와 이의 해결방안에 대한 근거를 중심으로 이를 구체화 할 수 있는 다각적 연구가 추후 계속 뒷받침됨으로써 앞으로의 UCP 개정근거가 되기를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강원진, “2002 제정 ICC 국제표준은행관행과 신용장서류심사 사례의 비교연구”, 국제상학 제20권 제2호, 국제상학회, 2005. 6.
- 강원진·김동윤, “신용장거래에서 비서류적 조건의 인정여부에 관한 사례검토 - ICC유권해석, 미국 및 한국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무역상무연구 제33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7. 2.
- 김광진, “UCP600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8. 6.
- 김기선, “한·미 신용장판례 비교평석 : 하자면제 교섭과 추인의 해석기준”, 무역상무연구 제16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1. 8.
- \_\_\_\_\_, “신용장거래관습 최적편성방안의 모색”, 무역상무연구 제49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1. 2.
- 김상조,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서류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청구논문, 경상대학교 대학원, 2014. 2.
- 김재명, “ICC DOCDEX 사례에 의한 화환신용장부 상업송장·운송서류 기재사항의 수리요건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청구논문, 경남대학교 대학원, 2007. 8.
- 김태훈, “신용장에 있어서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 대법원 2000. 5. 30. 선고 98다 47443판결 평석, 법률신문 2000. 9. 14. 제2914호.
- 문경진, “UCP600의 주요특성과 시사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대학원, 2013. 2.
- 박석재,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600)의 주요 내용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33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7. 2.
- 서정두, “UCP600 서류심사기준의 문제점과 실무상 유의점”, 무역상무연구 제33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7. 2.
- \_\_\_\_\_, ISBP(신용장 국제표준은행관습)의 주요내용과 적용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20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3. 8.
- 신정식, “국제무역거래에서의 서류조건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54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2. 5.
- 양영환·서정두, 신용장판례연구, 삼영사, 1995.
- 유재걸, “신용장 서류심사기준에 있어서 ISBP(국제표준은행관행)의 문제점과 개선

- 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06. 08.
- 이방식·박석재, “UCP600의 실무상의 유의점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42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9. 5.
- 조성란, “화환신용장 국제표준은행관습의 서류심사기준에 관한 해석 연구”, 박사학위 청구논문, 군산대학교 대학원, 2016. 2.
- Andrle, P., “Excluding articles : a troublesome trend”, *DCINSIGHT*, Vol. 14, No.1, 2008. 1/3.
- Anonymous, “The reasoning behind the UCP change”, *DCINSIGHT*, Vol. No.1, 1/3.
- Burjaq, M., “UCP600 one year on”, *DCINSIGHT*, Vol. 15, No.1, ICC, 2009. 1/3.
- Dolan, J. F., “Another view of notice without delay, disposal, and preclusion”, *DCINSIGHT*, Vol.11, No.2, ICC Publishing S.A. 2005.
- ICC Commentary on UCP600, ICC Publication No. 680, 2007.
- Ellinger, P., Dora Neo., *The Law and Practice of Documentary Letter of Credit*, Hart Publishing 2010.
- Rosenblith Robert M., “Current Development in Letter of Credit Law,” *UCCLJ*, vol.29, 1988
- Taneja, P., “UCP600 : A document restoring the credibility od L/Cs”, *DCINSIGHT*, Vol.12, No.4, ICC Publishing S.A. 2006.

## ABSTRACT

### A Study on Triggering the Implication for the Revision of UCP600

Sung-Ran CHO · KI-Sun KIM

This study is to find the accurate interpretations for the UCP600 by integrating, ISBP745, Official Opinions of ICC Banking Commission and some Case Laws suggesting the reasonable implication for the upcoming UCP.

Major results analyzed by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reclusion rule, UCP600 Article 16(c), is closely connected with the doctrine of documentary cure, so the banks requirement of Single Notice must state all the discrepancies of the documents presented. Exceptionally if the cured documents by the presenter are happened to be inconsistent the initial notice the bank can require the presenter to re-tender within the expiry date or the last day for presentation.

Secondly, The Issuing Bank can utilize the right of seeking a waiver of documentary discrepancies from the applicant with the time limit of 5 banking days. If the bank wants to require an applicant to report discrepancies promptly, he may include a provision in the reimbursement engagement limiting the time limit within which the applicant must give notice of facial discrepancies.

Thirdly, if a credit contains a non-documentary condition, banks will deem such condition as not states and will disregard it.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if a credit contains a non-documentary condition to be consistent with by the parties concerned in a credit the non-documentary condition can be treated, as an effective condition itself.

Fourthly, according to the Korean Supreme Court's decision, negotiation includes the method of crediting the credit amount and then transfers such funds into a special account and controls the account.

Finally, UCP600 Article 33 states a bank has no obligation to accept a presentation outside of its banking hours. However, there is no rule in UCP600 in regard to a presentation after the close of business. Hopefully the upcoming UCP has to stipulates a sort of definite article to determine such ambiguous.

Keywords : UCP600, Single Notice, Negotiation, Waiver, Non-documentary Condition